

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[별표 2]

5급 이상 전담직위평가 필기시험과목 (제10조제1항 관련)

직군	직렬	직류	시험과목
행정	행정	일반행정	헌법, 행정법, 행정학

비고 : 위 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렬의 전담직위평가지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시험과목을 결정한다.